

제298회 임시회
2011. 3. 17(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3. 17. (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황규철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1년 2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3월 2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3월 9일

(제2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황규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조문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의 정비(안 제1조 ~ 안 제8조,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인터넷”을 “인터넷 뱅킹”으로 한다.

제5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제목 중 “예약금”을 “예약금 납부와 취소”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후 3일 이내(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 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제7조제1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거”를 “다음 각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일(check-in)”을 각각 “사용 예정일(check-in)”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연휴양림 내에는”을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내에”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p>	<p>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2. 청소년 :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거나 청소년증을 소지한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p>
<p>3. 군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3. 군인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현 행	개 정 안
<p>4.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4.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u>법</u> 이라 한다) 제 17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3조(시설사용료)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3조(시설사용료 징수기준) 휴양림내의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p>
<p>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신용카드, 인터넷, 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 3. (생략) 	<p>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u>따른</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인터넷 뱅킹, ----- 3. (현행과 같음)
<p>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p>제5조(시설사용료의 면제) ----- ----- ----- <u>어느 하나에</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4. 기타 도지사가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4. 그 밖에 ----- -----</p>
<p>제6조(예약금)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의 사용료는 예약후 3일 이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기일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p>	<p>제6조(예약금 납부와 취소) ① 휴양림내 숙박시설을 예약한 자는 예약후 3일 이내 (공휴일 및 금융기관 휴무일은 제외)에 사용료 전액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p> <p>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약한 자가 지정기일내에 사용료를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으로 취소한다.</p>
<p>제7조(위약금 처리) ① 휴양림시설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 의거 예약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1. 사용일(check-in) 3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불</p> <p>2. 사용일(check-in) 2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10% 해당하는 금액</p>	<p>제7조(위약금 처리) ① ----- ----- -----다음 각호에 따라 ----- -----.</p> <p>1. 사용 예정일(check-in) ----- -----</p> <p>2. 사용 예정일(check-in) ----- ----- -----</p>

현 행	개 정 안
<p>3. <u>사용일(check-in)</u> 1일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사용료의 20% 해당하는 금액</p>	<p>3. <u>사용 예정일(check-in)</u>----- ----- -----</p>
<p>4. <u>사용일(check-in)</u>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총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p>	<p>4. <u>사용 예정일(check-in)</u> ----- ----- ----- -----</p>
<p>② 제1항의 경우 환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 등의 비용은 예약자의 부담으로 한다.</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요금표의 게시) 자연휴양림 내에는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p>	<p>제8조(요금표의 게시) 도지사는 <u>자연휴양림 내에</u> 별표의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p>
<p>제9조(세입조치) (생략)</p>	<p>제9조(세입조치) (현행과 같음)</p>
<p>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위탁관리)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u>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관 계 법 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